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본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

양 천 수**

I. 서론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나 전면적인 ‘비대면 강의’처럼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을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비일상이 어느덧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는 현대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한다. 코로나 사태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¹⁾ 동시에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를 던진다. 우리에게 ‘비대면 소통’이라는 새로운 소통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로 인해 ‘포함과 배제’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사회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에 어떤 새로운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가 출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이 글은 2020년 5월 25일 월요일에 필자가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서 발표한 PPT 자료를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그날 필자의 발표에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1)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관해서는 우선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법」(박영사, 2017) 참고.

Ⅱ.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문제

1. 두 가지 의미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비교적 빨리 진정시키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꽤 흥미로운 개념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의미를 갖는다. 달리 말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에 거리를 둔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쉽게 말해 ‘사회적 접촉’을 적게 하라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것처럼 일체의 사회적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게 아니면 인적이 없는 산속 등에서 철저하게 혼자서 살아가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홉스(Thomas Hobbes)가 말한 ‘자연상태’나 ‘전쟁상황’이 아닌 이상 오늘날 사회적 관계를 끊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비대면 소통, 즉 온라인 소통과 접촉이 가능한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도 비교적 손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으로 새기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인 대면접촉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인가, 인간에 의해 이루어

어지는 물리적인 ‘행위’(action)인가, 그게 아니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진행되는 ‘소통’(communication)인가와 같은 의문이 떠오른다.

(2) 사회적 차원의 물리적 거리두기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차원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 말을 바꾸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대면접촉을 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이다. 이는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구별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²⁾ 요컨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차원의 물리적 거리두기로 파악하고 있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거리두기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리두기’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2. 문제점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이 갖는 두 가지 의미에서 포착할 수 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이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문제로 사회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작동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거리두기가 오늘날 과연 가능한가, 라는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만약 사회가 인간 그리고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

2)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구별하는 태도에서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제시한 ‘이원적 사회이론’을 떠올릴 수 있다. 이원적 사회이론에 따르면, 전체 사회는 ‘사회적 하부체계’와 ‘생활세계’로 구별된다. 이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사회의 부분영역에 해당한다. 이를 보여주는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II (Frankfurt/M., 1982) 참고.

3)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권고한다. 강민경, “WHO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 「뉴스1」(2020. 3. 21) 참고.

는 물리적인 행위로 구성되고 작동한다면, 물리적 행위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패닉 현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 사이에 소통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회가 존속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잘 예증하듯이, 물리적 행위가 차단된다고 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그 때문에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실천적 문제로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기하는 이분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적극 시행되면서 다양한 이분법 문제가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로 대두한다. 이러한 예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안전과 자유의 이분법, 안전과 개인정보의 이분법, 코로나 대응에 따른 《포함·배제》의 이분법,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이분법 또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그것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 국가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우리와는 다른 태도와 정책을 보여주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강압적인 명령이나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와 같은 행정지도 형식으로 실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획일적인 행위제한 명령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인 명령이나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그것도 일반적·획일적인 행위제한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는 이에 저항하는 시위나 법적 투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이러한 차이를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⁴⁾ 이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발로로 볼 것인지, 그게 아니면 지나친 안전 지향이 초래한 안전국가의 통제결과로 볼 것인지 문제를 던질 수 있다.

Ⅲ. 코로나 사태와 사회구조의 변화

1.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가 현대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과연 현대사회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현대사회는 급격한 구조변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잘 보여준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제창한 제4차 산업혁명이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에도 이미 구조변동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 사태가 아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리고 오랜 기간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는 바이러스와 투쟁한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⁵⁾ 이렇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비로소 현대사회를 바꾸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코로나 사태가 확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가 현대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전면적인 비대면 강의나 재택근무는, 물론 이전에도 그

4) 이와 동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제하면서도 시민들의 일반적인 행위 자유는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개인정보는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의 일반적인 행위 자유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정책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

5) 이를 보여주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김진준 (옮김), 「총, 균, 쇠」(문학사상사, 2013) 참고.

여건은 마련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비로소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사회구조의 변화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보여준 사회구조의 변화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이에 관한 예로는 초연결사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지능정보사회, 안전사회를 언급할 수 있다.

(1) 초연결사회

먼저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언급할 수 있다.⁶⁾ 오늘날 세상 거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첫째는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망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제3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즈음의 인터넷망은 유선망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렇지만 무선 인터넷망이 실용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소통’의 가능영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둘째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에 참여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결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초연결사회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초연결사회라는 새로운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함, 즉 사회적 공리를 제공한다.⁷⁾ 스마트폰으로 매개되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6) 초연결사회에 관해서는 유영성 외,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미래」(한울, 2014); 금융찬, “디지털문명기 초연결사회, 창조경제논의”, 「컴퓨터월드」 제363호(2014. 1), 124-131쪽; 선원진·김두현, “초연결사회로의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와 통신」 제31권 제4호(2014. 4), 53-58쪽; 양천수,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영남법학」 제43집(2016. 12), 209-239쪽 등 참고.

7) 초연결사회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는 양천수, 앞의 책(주1), 17-18쪽 참고.

우리는 행위 반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하고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TV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스마트폰만으로 간단하게 모든 결제를 처리할 수 있고,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있는 모든 것, 가령 조명이나 온도, 음악, TV 등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 점점 현실화되는 자율주행자동차도 초연결사회가 제공하는 사회적 공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초연결사회가 우리에게 사회적 공리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초연결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험도 야기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초연결사회가 가속화되면, 한편으로 우리에게 관한 ‘모든 정보’가 초연결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회적 영역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일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초연결사회는 우리에게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집적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는 거의 매일 ‘구글’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는 우리에게 관한 정보를 거의 무한대로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자연스럽게 ‘빅데이터’(big data)가 형성된다. 초연결사회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빅데이터는 우리에게 사회적 공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는 우리의 인격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이를테면 빅데이터 과학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개인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초연결사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이자 도전이 된다.

(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digital transformation)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요컨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가 출현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정보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달리 말해, ‘소통’(communication) 또는 ‘통신’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정보’는 파피루스나 양피지 또는 종이와 같은 ‘유체물’ 형태의 소통매체를 통해 저장 및 전달되고 있었다.⁸⁾ 이 때문에 송신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등은 법체계 안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정보가 종이문서와 같은 아날로그적 소통매체를 통해 전달되던 사회에서는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아날로그적 정보를 한데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용되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소통매체가 개발되면서 정보의 존재방식 역시 크나큰 구조변동을 맞게 되었다. 물리적 소통매체에 기반을 둔 정보가 디지털화되는 현상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정보가 디지털화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아날로그적인 정보가 ‘0과 1’의 이진법 코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던 정보가 사이버 세계로 포섭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디지털화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과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3) 지능정보사회

초연결사회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빅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탈인간적인 존재, 즉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는 사회가 출현한다. 다시 말해, 거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지능정보사회’(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⁹⁾ 여기서 지능정보사회란 정확하게 어떤 사회를 뜻하는

8) 현대사회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위상에 관해서는 양천수, 앞의 책(주1), 제7장 참고.

9) 지능정보사회에 관해서는 심우민, “지능정보사회 입법 동향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외법」 제8권 제1호(2017. 2), 75-118쪽; 이원태 외,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가? 이에 관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제2조제5호는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인간중심 사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안 제2조제1호는 “지능정보기술이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이와 연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정보통신융합 및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융합 등에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렇게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에서 제시하는 지능정보사회나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개념정의의를 보면,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사회 패러다임은 본질적으로는 탈인간중심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사회가 지능정보사회로 변모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인에 힘입고 있다. 첫째는 빅데이터의 출현, 둘째는 ‘무어의 법칙’으로 대변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급속한 발전,¹⁰⁾ 셋째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의 개발이다. 첫째가 데이터에 관한 측면이라면, 둘째는 하드웨어에 관한 측면, 셋째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측면이다. 한편 이렇게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그 이전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탈인간중심적 사고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윤리적·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에게 법적 인격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형사책임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법·제도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등 참고.

10) 다만 최근 반도체업계는 ‘무어의 법칙’을 폐기했다. 한동희, “[무어의 법칙 폐기]① 반도체 패러다임 대전환…IT융합 칩수요 다변화 시대”, 「ChosunBiz」(2016. 4. 12) 참고.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윤리적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진지하게 논의된다.¹¹⁾ 더불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직업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탈인간중심적 사회가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적·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4) 안전사회

안전사회 역시 오늘날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변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¹²⁾ ‘안전사회’(Sicherheitsgesellschaft)란 안전을 최우선적인 사회적 목표로 설정하는 사회를 말한다.¹³⁾ 물론 안전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사태가 전적으로 유발한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가 위험사회로 접어들면서 안전사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구현되고,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소통의 안정성이 중요해지면서 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침해수단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회, 더욱 정확하게 말해 안전한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기인한다.

이러한 안전사회는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실행되면서

11) 이에 관해서는 웬델 윌러치·콜린 알렌, 노태복 (옮김), 「왜 로봇의 도덕인가」(메디치미디어, 2014); 양천수, “인공지능과 윤리: 법철학의 관점에서”, 「법학논총」(조선대) 제27집 제1호(2020. 4), 73-114쪽 참고.

12) 아래의 서술은 양천수, 앞의 책(주1), 7쪽 참고.

13) 안전사회에 관해서는 토비야스 징엘슈타인·피어 슈틀레, 윤재왕 (역), 「안전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양천수,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안암법학」제49호(2016. 1), 81-127쪽 참고.

역설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동지》의 구별 및 《포함·배제》의 구별과 결합되면서, 안전을 위해 동지와 적을 구별하고 이러한 적을 사회에서 강력하게 배제하는 모습이 증대하고 있다. 이때 적이란 바로 코로나 확진자를 말한다. 코로나 확진자는 어느덧 비확진자 및 이들을 위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적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점증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요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전사회는 사회의 소통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연결이 복잡하게 확장되는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사회 패러다임일지 모른다. 사회의 연결이 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요청도 덩달아 증대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어느 한 영역에서 현실화된 위험은 그 영역에만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손쉽게 확산된다. 전체 사회가 하나의 사회적 체계를 형성하면서, 사회 일부분의 문제가 순식간에 사회 전체의 문제로 파급되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2008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라 말할 수 있다.¹⁴⁾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문제되는 사이버 보안 문제 역시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가 왜 오늘날 안전사회가 현대사회의 필연적인 사회 패러다임인지를 잘 보여준다.

IV.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를 맞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현하고 있는지 개관해 본다.

14)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한국학술정보, 2011) 참고.

1. 사회적 소통에 관한 문제

우선 사회적 소통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이는 소통매체 문제, 소통 왜곡 문제, 소통의 수직적 구조 심화 문제, 소통플랫폼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통매체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물리적 접촉이 억제되고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소통매체 문제가 새롭게 등장한다. 요컨대 새로운 소통매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소통매체’(Kommunikationsmedium)란 사회 안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달리 말해 소통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매체를 말한다.¹⁵⁾ 이러한 소통매체 개념은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Niklas Luhmann)이 제시한 《매체-형식》 구별을 원용한 것이다. 루만에 따르면, ‘매체’(Medium)란 “느슨하게 결합된 요소들”을, ‘형식’(Form)은 “엄격하게 결합된 요소들”이라는 의미로 서로 구별된다.¹⁶⁾ 이러한 소통매체로서의 의미(Sinn), 언어, 친밀성, 권력, 자본, 진리, 믿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의미는 생각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매체이다. 의미라는 매체가 없으면 우리는 사고도 소통도 할 수 없다.¹⁷⁾ 언어는 소통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언어를 통해 의미는 더욱 복잡하게 구별될 수 있다. 나아가 친밀성, 권력, 자본, 진리, 믿음이라는 소통매체에 힘입어 사랑이나 정치, 경제, 학문, 종교와 같은 사회적 체계에서 소통이 성공적으로

15) 소통매체에 관해서는 니클라스 루만, 윤재왕 (옮김), 「체계이론 입문」(새물결, 2014), 293쪽 아래 참고.

16) 니클라스 루만, 장춘익 (옮김), 「사회의 사회」(새물결, 2014), 236쪽. 이를 소개하는 정성훈, “루만의 사회이론에서 체계이론의 상대화”, 「철학연구」 제127집(2019. 겨울), 220쪽 참고.

17) 이에 관해서는 Niklas Luhmann, “Sinn als Grundbegriff der Soziologie”, in: J. Habermas/N.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Main, 1972), S. 25-100 참고.

이루어질 수 있다.¹⁸⁾

그런데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소통매체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친밀성’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소통매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¹⁹⁾ 친밀성은 연인커플이나 가족처럼 우리 인간 존재에게 매우 친숙한 소규모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소통매체가 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Ferdinand Tönnies)가 강조한 ‘공동사회’(Gemeinschaft)도 친밀성을 기초로 한다. 연대성 역시 친밀성이 사라진다면 형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친밀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소통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렵다. 친밀성은 물리적 접촉을 수반하는 비대면 소통을 통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물리적 접촉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친밀성이 형성될 계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라는 소통매체의 힘 역시 약해진다. 오늘날 소통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소통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빨라지면서 소통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과연 진실인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관심이 적어진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짜뉴스’가 사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손쉽게 수용된다. 덩달아 이른바 ‘팩트 체크’가 언론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된다. 이는 그 만큼 소통에 참여하는 이들이 정보의 진리성에 무관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통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을 찾고 이를 맹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진리라는 매체보다 믿음이라는 매체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과 시민혁명 이후 우리는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진리보다 믿음이, 객관성

18) 이러한 매체를 “확산매체”와 “성공매체”로 구별하는 경우로는 정성훈, “디지털 시대, 확산매체와 성공매체 사이의 긴장”, 「인문학연구」(조선대) 제51집(2016), 9-44쪽 참고.

19) 친밀성이라는 소통매체에 관해서는 니클라스 루만, 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새물결, 2009) 참고.

보다는 주관적 편향성이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현상을 접하면, 과연 우리가 근대인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²⁰⁾ 둘째, 정치적인 진영논리가 사회적 소통을 식민지화한다는 것이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정치적 논리가 소통에 영향을 끼치면서 진리라는 매체보다 《적-동지》라는 구별이 정보를 판단하는 데 지배적인 기준이 된다. 우리 편이 주장하는 바는 무조건적으로 믿고, 적이 주장하는 바는 배척한다.²¹⁾ 정치적인 진영논리에 따라 진리보다 믿음이 더욱 강력한 소통매체가 된다. 셋째,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것처럼 자본이라는 강력한 소통매체가 오늘날 사회에서 진행되는 소통, 특히 온라인 소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유튜브”(Youtube)가 이를 잘 예증한다. 조회수가 자본과 비례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튜브 소통에 참여하는 이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진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편견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더 많다. 객관적이고 건조한 진리보다는 믿음과 편견에 기반을 둔 정보가 더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 조회수를 높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리라는 매체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감소한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소통이 강화되면서 친밀성과 진리와 같이 연대성과 객관성을 쌓는 데 중요한 소통매체는 그 힘이 약화된다. 반면 자본 및 믿음과 같은 소통매체의 힘은 강해진다. ‘비합리성과 목적 합리성의 결합’이라는 역설적인 현상이 온라인 소통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친밀성과 진리가 약화되면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매체가 필요해진다. 무엇이 친밀성을 대신할 수 있을까? 외모와 같은 ‘이미지’가 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아니

20) 이러한 문제 제기로는 브뤼노 라투르,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참고.

21)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적-동지》 구별에서 찾는 경우로 칼 슈미트(Carl Schmitt)를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합법성과 정당성: 칼 슈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영남 법학」 제25호(2007. 10), 91-115쪽 참고.

면 ‘상징적 권력’과 같은 새로운 상징적인 매체가 출현할 것인가? 소통매체에 관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 소통의 왜곡 문제

소통의 왜곡 문제 역시 현대사회가 당면한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소통매체에 관한 문제가 소통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매체에 관한 문제라면, 소통의 왜곡 문제는 소통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진실 여부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통의 왜곡 문제는 소통매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진리라는 매체의 힘이 약해지고 그 자리를 믿음이나 정치적 논리, 자본이 대신하면서 소통의 왜곡 역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통의 왜곡 문제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및 이미지 왜곡이 그것이다. 방법이원론에서 연원하는 《존재·당위》라는 구별을 원용하면, 가짜뉴스는 존재 그리고 혐오표현은 당위와 관련을 맺는다. 이 점에서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은 우리 형법이 규율하는 명예훼손(제307조)이나 모욕(제311조)과 관련을 맺는다. 다만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은 특정한 개인과 관련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일종의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이자 기본권을 강조하는 진영에서는 가짜뉴스나 혐오표현을 굳이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표한다. 그렇지만 현대 초연결사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생산된 가짜뉴스가 주식시장과 같은 사회적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혐오표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단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어떻게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²²⁾ 더군다나 가짜뉴스나 혐오표현은 ‘유튜브’의 경우가 보여주는

22) 이에 관해서는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어크로스, 2018) 참고.

것처럼 자본이라는 소통매체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 왜곡 역시 중요한 소통 왜곡 문제로 거론할 수 있다. 물리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친밀성이 약화되면서 시각적 접촉만으로 충분한 이미지,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Immanuel Levinas)의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면 ‘얼굴’이 중요한 소통매체로 부각된다.²³⁾ 이로 인해 이미지가 중요한 구별 및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이미지 왜곡 역시 새로운 문제로 대두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deepfake)가 이를 예증한다.

(3) 소통의 수직적·차별적 구조 강화

인터넷이 구현되면서 ‘정보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실제로 인터넷 덕분에 많은 이들이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소통방식 역시 민주화, 즉 ‘탈권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온라인 소통은 소통의 수직적·차별적 구조를 강화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른바 ‘카카오 단톡방’이나 ‘줌회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최근 단톡방은 새로운 집단적 차별과 혐오표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줌’(Zoom)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는 회의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지만, 반대로 회의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역시 제공한다. 실제로 줌회의에 참여해 보면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을 지켜본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줌’을 이용한 ‘줌회식’ 등이 실현되면서 회식의 수직적 구조가 강화된다.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 마련되는 회식이 또 다른 업무 회의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23) 레비나스에 관해서는 양천수·최샘, “타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 레비나스의 철학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제23권 제1호(2020. 4), 169-208쪽 참고.

(4) 소통플랫폼 문제

소통플랫폼 문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던지는 중요한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통플랫폼의 독점 문제이다. ‘시장’이라는 예가 시사하는 것처럼, ‘플랫폼’(platform)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인류가 고민해 온 문제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쟁을 하고 갈등을 유발하였다. 그런데 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플랫폼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기능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였고, 이로 인해 플랫폼을 선점 또는 독점하기 위한 경쟁과 싸움이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한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것은 시장을 지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소통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 첫째, 소통플랫폼을 독점하면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는 온라인 소통을 장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특히 엄청난 양의 개인 데이터가 플랫폼 기업에 집중된다. 구글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이렇게 데이터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소통에 참여하는 이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공정하게 이용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둘째,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가 보여주듯이 오늘날 데이터는 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²⁵⁾ 구글이나 아마존의 사례가 예증하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확보하면 이를 활용해 막대한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있다. 데이터 집중이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온라인화’는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통플랫폼

24) 이에 관해서는 이즈미다 료스케, 이수형 (옮김), 「구글은 왜 자동차를 만드는가: 구글 vs 도요타, 자동차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미래의창, 2015) 참고.

25) 이를 보여주는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데이터 이코노미」(한스미디어, 2017) 참고.

품을 독점하면서 소통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창출하는 경제를 장악하면 경제적 집중,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의 재분배나 기본소득 문제가 새로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셋째, 소통플랫폼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문제가 등장한다. 소통플랫폼을 독점하면 플랫폼 참여에 관해 자연스럽게 《포함-배제》 문제가 불거진다. 그런데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온라인 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소통플랫폼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소통플랫폼이 독점되는 상황에서도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소통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범적·기술적 차원에서 이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근에 진행되는 온라인 학교교육이 잘 예증하듯이, 온라인 소통플랫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역량이 필요하다. 소통플랫폼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비로소 자율적인 참여자로서 온라인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참여자의 ‘소통참여 역량’을 키울 것인지가 중요한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로 대두한다.²⁶⁾

2. 친밀성의 위기와 생활세계의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일련의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면서 물리적 대면접촉을 필요로 하는 친밀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친밀성에 기반을 두는 윤리적 감정이나 연대의식 역시 위기에 처하고 있다. 친밀성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공동체 역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인관계나 가족관계가 문제에 봉착한다. 사랑은 친밀성을 필요로 한다. 친밀성이 없으면 사랑도 성립할 수 없고 연인관계도 형성될 수 없다.

26) 역량 문제에 관해서는 마사 C. 누스바움, 한상연 (옮김), 「역량의 창조」(돌베개, 2015) 참고.

연인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가족관계 역시 형성될 수 없다. 그리고 가족이 없으면 사회가 존속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생물학적 재생산’도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가 모든 친밀성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는 친밀성에 대해서도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이미 친밀성을 획득한 가족들의 경우에는 친밀성이 더욱 깊어지는 순기능이 나타난다. 반대로 친밀한 관계를 확보하지 못한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친밀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직후 발생한 이태원 클럽 사건을 과연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친밀성을 향한 욕망은 우리 인간이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친밀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연인관계와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생물학적 재생산을 유지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친밀성을 필요로 하는 생활세계를 어떻게 존속시킬 수 있을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는 생활세계 자체를 새롭게 진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를 새롭게 설계하거나 재생산 구조 및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반려 인공지능 로봇이나 성 인공지능 로봇을 도입 및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둘째는 생물학적 몸으로 구성된 인간 존재 자체를 새롭게 진화시키는 것이다. 생물학적 인간이 진화되지 않고는 새로운 생활세계,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기에 인간 존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물리적 접촉을 하지 않아도 친밀성이나 연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출현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그 밖의 문제

이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학교와 대학을 포함하는 교육체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현재 논란을 빚는 원격의료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V. 사회적 · 인권적 ·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

마지막 논의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기되는 사회적 · 인권적 ·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1.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먼저 이론적 기초로서 ‘사회’(society: Gesellschaft) 개념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는 사회를 ‘인간중심적’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는 인간 존재로 구성되는 물리적 공간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 개념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사회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접촉을 필수적으로 전제하지 않아도 사회는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 더불어 다수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사회가 존속하는 것도 아니다. 다수의 인간이 존재만 할 뿐 이들 사이에 소통과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는 온전하게 존속하지 않는다.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현 상황을 관찰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사회 개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로 필자

는 루만이 제시한 사회 개념을 언급하고자 한다.²⁷⁾ 독자적인 체계이론에 바탕을 두는 루만의 사회이론은 사회를 인간으로 구성되는 물리적 공간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 대신 루만은 사회는 사회적 체계와 환경의 구별로 구성된다고 본다.²⁸⁾ 더불어 이러한 구별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체계가 존속 및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소통’(Kommunikation) 그 자체라고 본다.²⁹⁾ 물론 소통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점에서 인간은 사회적 체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면, 사회가 사회로서 작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된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개념은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물리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사회가 존속 및 작동하는 작금의 현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말을 바꾸면, 이러한 사회 개념을 동원함으로써 우리는 코로나가 진행 중인 지금의 사회를 적절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개념은 우리가 사회를 파악할 때 ‘인간중심적 사고’와 거리를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인간이 아닌 소통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를 파악하는 사고, 즉 ‘탈인간중심적 사고’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³⁰⁾ 물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탈인간중심적 사고로 사회를 파악한다고 해서 인간의 규범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탈인간중심적 사고는 분석적 차원, 즉 존재적 차원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규범적 차원의 사고와는 구별해야 한다. 분석적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사회적 체계가 아닌 환경에 속하지만, 규범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 존재의 규범적 지위는 불가침의 것으로 보장된다.

27) 루만의 사회 개념 및 이론에 관해서는 니클라스 루만, 앞의 책(주16) 참고.

28) Niklas Luhmann, *Einführung in die Theorie der Gesellschaft*, 2. Aufl. (Heidelberg, 2009), S. 61.

29) Niklas Luhmann, 위의 책(주28), S. 17.

30)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행정법연구』제46호(2016. 8), 1-24쪽 참고.

물론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규범적 차원에서 인간을 가장 우선적인 존재로 파악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최근 규범적 차원에서도 탈인간중심적 사고가 힘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만이 유일하게 존엄한 존재라는 사고를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이렇게 인간중심적으로 사회를 파악하는 것을 반성하는 일과 함께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인간중심적 사회 개념을 지탱하는 모델인 «주체-객체-행위 모델»을 재검토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유체물을 기준으로 하여 객체를 파악하는 ‘유체물 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체계는 권리의 객체를 물건으로 파악하고 이때 물건을 유체물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방식은 데이터나 정보를 물건으로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³²⁾ 유체물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물건을 다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온라인 소통의 강화 및 보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속적인 거리두기 정책으로 오프라인 소통보다는 온라인 소통, 즉 대면 소통보다는 비대면 소통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강화되는 온라인 소통에 대비하고 이를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우리의 독자적인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는 ‘줌’이나 ‘구글클래스’와 같은 외국의 소통플랫폼을 주로 활용하는데 우리 사회에 적합한 소통플랫폼을 개발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통 왜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나 혐오표현을 새롭게 처벌하거나 온라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셋째, 소통플랫

31) 이를 보여주는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이성과감정, 2020) 참고.

32) 이에 관해서는 고훈수·임용(편), 「데이터오너십」(박영사, 2019) 참고.

품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소통플랫폼 독점에 대항하여 이용자들이 소통플랫폼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통플랫폼 등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될 것이다. 이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innovative, inclusive state)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³³⁾ 여기서 혁신적 포용국가는 두 가지 방향을 추구한다. 첫째는 혁신을 추구하는 국가이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은 때로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 혁신을 너무 강조하면 혁신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반면 이들을 모두 포용하고자 하면 국가와 사회를 혁신하는 것이 저해될 수도 있다. 현 정부는 이렇게 때로 모순되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는 비전, 즉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내놓은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전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경제 영역에서 실현하는 방안으로 ‘혁신적 포용경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혁신적 포용경제를 구체화하는 방안 역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최근 실시된 재난지원금 정책이나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기본소득 정책처럼 사회 구성원들

33) 포용국가에 관해서는 Anis A. Dani/Arjan de Haan, *Inclusive States: Social Policy and Structural Inequalities* (World Bank, 2008) 참고.

에게 일률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직접 잡아 주는 방안에 해당한다. 둘째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방안이다. 이는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안에 해당한다. 이 같은 두 방안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에 현재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후자가 더욱 적절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자율적인 역량강화야말로 오늘날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포용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 새로운 규제형식 모색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형식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규제형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³⁴⁾ 더불어 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아키텍처 규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³⁵⁾

VI. 맺음말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오늘날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가 등장하는지, 이에 어떻게

34)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천수,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진화”,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2019. 11), 154-172쪽 참고.

35) 아키텍처 규제에 관해서는 양천수·우세나, “민사집행과 아키텍처 규제: 아키텍처 규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2020. 2), 47-75쪽 참고.

대응해야 하는지 조감해 보았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안겨 준다. 코로나 덕분에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우리 인류에게 위협일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류가 새롭게 진화하는 데 필요한 진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분명 우리에게 여러 문제를 야기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필요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민경, “WHO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 「뉴스1」, 2020.
- 고학수·임용 (편), 「데이터오너십」, 박영사, 2019.
- 금융찬, “디지털문명기 초연결사회, 창조경제논의”, 「컴퓨터월드」 제363호, (주)아이티엠지, 2014.
- 김환석 외,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이성과감성, 2020.
-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데이터 이코노미」, 한스미디어, 2017.
- 선원진·김두현, “초연결사회로의 변화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와 통신」 제31권 제4호, 한국통신학회, 2014.
- 심우민, “지능정보사회 입법 동향과 과제”,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8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 양천수, “합법성과 정당성: 칼 슈미트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영남법학」 제25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_____,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 한국학술정보, 2011.
- _____,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안암법학」 제49호, 안암법학회, 2016.
- _____,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행정법연구」 제46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 _____, “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영남법학」 제43집,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_____, 「제4차 산업혁명과 법」, 박영사, 2017.
- _____,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형식의 진화”,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9.
- _____, “인공지능과 윤리: 법철학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양천수·우세나, “민사집행과 아키텍처 규제: 아키텍처 규제의 성격과 관련 하여”,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 양천수·최샘, “타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 레비나스의 철학을 예로 하여”, 「법철학연구」제23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20.
- 유영성 외,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우리의 미래」, 한울, 2014.
- 이원태 외,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 정성훈, “디지털 시대, 확산매체와 성공매체 사이의 긴장”, 「인문학연구」제51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 _____, “루만의 사회이론에서 체계이론의 상대화”, 「철학연구」제127집, 철학연구회, 2019.
- 한동희, “[무어의 법칙 폐기]① 반도체 패러다임 대전환…IT융합 칩수요 다변화 시대”, 「ChosunBiz」, 2016.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2018.
- 마사 C. 누스바움, 한상연 (옮김), 「역량의 창조」, 돌베개, 2015.
- 재레드 다이아몬드,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문학사상사, 2013.
- 브뤼노 라투르,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 니클라스 루만, 정성훈 외 (옮김),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새물결, 2009.
- _____, 장춘익 (옮김), 「사회의 사회」, 새물결, 2014.
- _____, 윤재왕 (옮김), 「체계이론 입문」, 새물결, 2014.
- 웬델 월러치·콜린 알렌, 노태복 (옮김), 「왜 로봇의 도덕인가」, 메디치미디어, 2014.
- 이즈미다 료스케, 이수형 (옮김), 「구글은 왜 자동차를 만드는가: 구글 vs 도요타, 자동차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 미래의창, 2015.
- 토비아스 징엘슈타인·피어 슈틀레, 윤재왕 (역), 「안전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Anis A. Dani/Arjan de Haan, *Inclusive States: Social Policy and Structural Inequalities*, World Bank, 2008.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II, Frankfurt/M., 1982.

Niklas Luhmann, “Sinn als Grundbegriff der Soziologie”, in: J. Habermas/N. Luhmann,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was leistet die Systemforschung?*, Frankfurt/Main, 1972.

_____, *Einführung in die Theorie der Gesellschaft*, 2. Aufl., Heidelberg, 2009.

【국문초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본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

양 천 수**

코로나 사태는 현대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한다. 코로나 사태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를 던진다. 우리에게 ‘온라인 소통’이라는 새로운 소통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로 인해 ‘포함과 배제’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사회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에 어떤 새로운 사회적·인권적·법적 문제가 출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주제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제4차 산업혁명, 온라인 소통, 포함과 배제, 소통매체, 소통플랫폼

* 이 글은 2020년 5월 25일 월요일에 필자가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서 발표한 PPT 자료를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그날 필자의 발표에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ABSTRACT】

The Changes and Problems of Modern Society in the Post-Corona Era

Chun-Soo Yang*

The corona crisis is making a lot of changes in modern society. The corona crisis shows that the changes of social structure that bega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o not exist only in theory. At the same time, the corona crisis throws us new social, human rights and legal issues. It shows us the possibility of a new way of communication called ‘untact communication’ (online communication), but this also brings up new social, human rights and legal issues regarding ‘inclusion and exclus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how social structures are changing in the corona or post-corona era, what new social, human rights and legal issues are emerging, and how it is desirable to respond to those issues.

Keywords : Corona, Post-Corona Era, 4th Industrial Revolution,
untact communication, inclusion and exclusion,
communication media, communication platform.

*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 Dr. jur.